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유재산특례 확대 및 공유재산특례 추가 등 >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71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국유재산특례 확대 및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추가 등(안 제4조)	3
※ 참고자료	
1. 특정연구기관 국·공유지 사용 현황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7. 18.

다.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 여력 없어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및 대부기간 종료 후 분할납부에 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를」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각각 '21. 8. 31., '23. 8. 16.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2. 주요내용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매각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나.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제3항).
- 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 라.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국유재산특례 확대 및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추가 등(안 제4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항).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도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제4항),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제4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현행	개정안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 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안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특정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에서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¹⁾ 또는 공동관리기구²⁾에 국유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무상 대부의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무상 대부·양여 외에 “사용허가”³⁾를 추가하고, ② 국유 재산 외에 공유재산을 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며, ③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최장기간을 20년으로 법률에 규정하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⁴⁾⁵⁾와 동일한 내용으로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의 장기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특정연구기관은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개별법에서 국·공유재산 특례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개별법에서 각 기관별로 인정되는 특례의 정도가 상이한바, 개정안에 따라 모든 특정연구기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특례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국회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21.2.17. 수정가결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부지매입 등의 조건 없이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와 그 갱신기간을 5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대부받는 경우 토지매입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은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로 한정하며, 영구시설물 축조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입할 경우 20년에 걸쳐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2021.8.25.), 본회의 의결(2021.8.31.)을 거쳐 현재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이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특례를 규정하게 된 것임.

<개별법상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특례 입법 현황>

연구기관명	입법 현황
한 국 과 학 기 술 원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대 구 경 북 과 학 기 술 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울 산 과 학 기 술 원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한 국 원 자 력 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한 국 원 자 력 의 학 원	없음
한 국 원 자 력 통제기술원	없음
한 국 연 구 재 단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연구기관명	입법 현황
	· 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국 과 학 창 의 재 단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없음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없음
한 국 세 라 믹 기 술 원	없음
한 국 산 업 기 술 시 험 원	없음
정 보 통 신 산 업 진 흥 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6. 22.> ④ 삭제 <2015. 6. 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기 초 과 학 연 구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연구원 또는 외국투자기관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연구기관명	입법 현황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로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별법상의 특례 규정을 살펴보면, 4대 과학기술원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은 개별법에서 국·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모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이지만,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하여만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기초과학연구원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최장기간이 50년이고 갱신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4조에서 모든 특정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유재산 특례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연구기관 중 특별히 국·공유재산 특례의 확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모든 특정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8.)

■ 한국과학기술원

- 대전본원 토지 및 건물 : 기관 자체 소유
- 본원 외 부지 및 시설

구분	시설명칭	임대기간	사용부지(또는 시설) 면적(m ²)	임대료(대부료) 단가(원/m ²)	연간임대료(대부료)(원)
국유 재산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2.5.8.~'27.5.7. (5년)	380m ²	10,277원/m ²	3,905,160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필지)	'20.2.21.~'25.2.20. (5년)	33,794m ²	무상	무상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본원 토지 : 기관 자체소유
- 본원 시설 사용현황

구분	시설명칭	임대기간	사용부지(또는 시설) 면적(m ²)	임대료(대부료) 단가(원/m ²)	연간임대료(대부료)(원)
국유 재산	DGIST 통합행정지원센터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34.4.29.(20년)	11,502.44m ²	무상	—
	DGIST 컨퍼런스센터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34.4.29.(20년)	6,384.96m ²	무상	—
	DGIST 컨실리언스센터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34.4.29.(20년)	35,018.89m ²	무상	—
	DGIST 신물질과학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34.4.29.(20년)	13,574.22m ²	무상	—
	DGIST 정보통신융합공학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34.4.29.(20년)	12,541.04m ²	무상	—
	DGIST 뇌과학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34.4.29.(20년)	16,847.52m ²	무상	—
	DGIST 로봇공학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34.4.29.(20년)	23,874.01m ²	무상	—
	DGIST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34.4.29.(20년)	14,454.34m ²	무상	—
	DGIST 학술정보어학관 부지	'14.4.30.~	11,833.94m ²	무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34.4.29.(20년)				
DGIST 산학협력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7,241.71m ²	무상	—	
DGIST 체육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8,573.82m ²	무상	—	
DGIST 학생기숙사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25,635.09m ²	무상	—	
DGIST 기혼자숙소101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3,427.69m ²	무상	—	
DGIST 기혼자숙소102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3,529.59m ²	무상	—	
DGIST 교직원숙소201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2,744.25m ²	무상	—	
DGIST 교직원숙소202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1,446.87m ²	무상	—	
DGIST 영빈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566.75m ²	무상	—	
DGIST 국제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4,350.14m ²	무상	—	
DGIST 재활용창고A,B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7.10.~ '34.7.09.(20년)	40.68m ²	무상	—	
DGIST 가압장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167.65m ²	무상	—	
DGIST 야외무대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116.02m ²	무상	—	
DGIST 유리온실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4.4.30.~ '34.4.29.(20년)	282.94m ²	무상	—	
DGIST 파워플랜트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0.12.29.~ '30.12.28.(20년)	489.30m ²	무상	—	
DGIST 비슬빌리지205~207 부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7.6.30.~ '37.6.29.(20년)	17,357.89m ²	무상	—	

■ 울산과학기술원

- 울산본원 토지 (일부) : 기관 자체소유 (설립 시 울산시 공유지 양여)
- 본원 외 부지 및 시설

구분	시설명칭	임대기간	사용부지(또 는 시설) 면적(m ²)	임대료(대부 료) 단가(원/m ²)	연간임대 료 (대부료)(원)
국 유 재 산	울산과학기술원 부지 51필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18.11.1~'23.10.31 (5년)	80,674.0m ²	무상	—
	울산과학기술원 건물 12개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19.3.1~'24.2.28 (5년)	169,689.2m ²	무상	—
	울산과학기술원 건물 7개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21.10.17~'26.10.16 (5년)	108,988.2m ²	무상	—

■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본원 토지 및 건물 : 기관 자체소유
- 본원 중 일부 부지 및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칭	임대기간	사용부지(또는 시설)면적(m ²)	임대료(대부료)단가(원/m ²)	연간임대료(대부료)(원)
국유재산	부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23.1.1~'28.12.31 (6년)	3,990m ²	무상	—
	자연과학동 건물 (광주광역시 북구)	'23.2.2~'43.2.1 (20년)	9,642.62m ²	무상	—

■ 한국원자력의학원

- 서울 본원 토지 및 건물 : 기관 자체소유
- 동남원 분원 토지 및 건물 : 기관 자체소유

■ 한국연구재단

- 대전 본원 토지 및 건물 : 기관 자체소유
- 서울 청사 토지 및 건물 : 기관 자체소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진천 본원 토지 및 건물 : 기관 자체소유

■ 한국과학창의재단

- 서울 본원 건물 : 공공건물 임차 (한국과학기술인총연합회 과학기술회관 2개층)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진천 본원 토지 및 건물 : 기관 자체소유
- 본원 외 부지 및 시설

구분	시설명칭	임대기간	사용부지(또는 시설) 면적(m ²)	임대료(대부 료) 단가(원/m ²)	연간임대료 (대부료)(원)
공유 재산	IoT기술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송도구)	'06.11.23~'26.8.22 (19년 9개월)	40,637.5m ²	무상	—
	메타버스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15.9.15.~ * 협의 종료 시까지	2,359m ²	무상	—

■ 기초과학연구원

- 대전 본원 토지 및 건물 : 기관 자체소유
- 본원 외 부지 및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칭	임대기간	사용부지(또는 시설) 면적(m ²)	임대료(대부 료) 단가(원/m ²)	연간임대료 (대부료)(원)
국유 재산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부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651)	'21.9.1.~ '26.8.31.(5년)	807,424.9m ²	무상	—
	임상보호관리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652)	'21.9.1.~ '26.8.31.(5년)	144,641.1m ²	무상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대전 본원 토지 및 건물 : 기관 자체소유
- 본원 외 부지 및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칭	임대기간	사용부지(또는 시설) 면적(m ²)	임대료(대부료) 단가(원/m ²)	연간임대료 (대부료)(원)
국유 재산	국가환경방사선감시망				
	강원양구 방사선감시소 (강원도 양구군, 군부대)	'2249~'27.48 (5년)	1m ²	무상	무상
	강원인제 방사선감시소 (강원도 인제군, 군부대)	'2249~'27.48 (5년)	1m ²	무상	무상
	강원화천 방사선감시소 (강원도 화천군, 군부대)	'2249~'27.48 (5년)	1m ²	무상	무상
	강원고성 방사선감시소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2249~'23.48 (1년)	1m ²	무상	무상
	강원원주 방사선감시소 (강원도 원주시, 기상청)	'21.11.1~'26.7.31 (4년 9개월)	1m ²	무상	무상
	강원동해 방사선감시소 (강원도 동해시, 기상청)	'21.11.1~'26.7.31 (4년 9개월)	1m ²	무상	무상

	기상청)				
	강원철원 방사선감시소 (강원도 철원군, 기상청)	'21.11.1.~'26.7.31. (4년 9개월)	1㎡	무상	무상
	강원태백 방사선감시소 (강원도 태백시, 기상청)	'21.11.1.~'26.7.31. (4년 9개월)	1㎡	무상	무상
	강원홍천 방사선감시소 (강원도 홍천군, 기상청)	'21.8.1.~'26.7.31. (5년)	1㎡	무상	무상
	서울내곡 방사선감시소 (서울 서초구, 군부대)	'22.4.9.~'27.4.8 (5년)	1㎡	무상	무상
	서울용산 방사선감시소 (서울 용산구, 군부대)	'22.4.9.~'27.4.8 (5년)	1㎡	무상	무상
	인천을왕 방사선감시소 (인천 중구, 군부대)	'22.4.9.~'27.4.8 (5년)	1㎡	무상	무상
	경기화성 방사선감시소 (경기 화성시, 군부대)	'22.4.9.~'27.4.8 (5년)	1㎡	무상	무상
	경기양주 방사선감시소 (경기 양주시, 군부대)	'22.9.30.~'27.9.29 (5년)	1㎡	무상	무상
	경북경주동천 방사선감시소 (경북 경주시, 군부대)	'22.4.9.~'27.4.8 (5년)	1㎡	무상	무상
	경북청송 방사선감시소 (경북 청송군, 군부대)	'22.4.9.~'27.4.8 (5년)	1㎡	무상	무상
	경북포항용덕 방사선감시소 (경북 포항시, 군부대)	'22.4.9.~'27.4.8 (5년)	1㎡	무상	무상
	경남창원 방사선감시소 (경남 창원시, 군부대)	'22.4.9.~'27.4.8 (5년)	1㎡	무상	무상
	전남목포 방사선감시소 (전남 목포시, 기상청)	'21.11.1.~'26.10.31. (5년)	1㎡	무상	무상
	전남여수고소 방사선감시소 (전남 여수시, 기상청)	'21.11.1.~'26.10.31. (5년)	1㎡	무상	무상
	전남완도 방사선감시소 (전남 완도군, 기상청)	'21.11.1.~'26.10.31. (5년)	1㎡	무상	무상
	전남고흥 방사선감시소 (전남 고흥군, 기상청)	'21.11.1.~'26.10.31. (5년)	1㎡	무상	무상
	전남해남 방사선감시소 (전남 해남군, 기상청)	'21.11.1.~'26.10.31. (5년)	1㎡	무상	무상
	전남무안 방사선감시소 (전남 무안군, 기상청)	'21.11.1.~'26.10.31. (5년)	1㎡	무상	무상
	제주서귀포고산 방사선감시소 (제주 서귀포시, 기상과학원)	'21.11.1.~'24.10.31. (3년)	1㎡	무상	무상
	전북남원 방사선감시소 (전북 남원시, 기상레이더센터)	'21.11.1.~'24.10.31. (3년)	1㎡	무상	무상
	전남진도 방사선감시소 (전남 진도군, 기상레이더센터)	'21.11.1.~'24.10.31. (3년)	1㎡	무상	무상

	경북영덕 방사선감시소 (경북 영덕군, 기상청)	'21.11.1.~'24.12.31. (3년 2개월)	1㎡	무상	무상
	경북영천 방사선감시소 (경북 영천시, 기상청)	'21.11.1.~'24.12.31. (3년 2개월)	1㎡	무상	무상
	경북봉화 방사선감시소 (경북 봉화군, 기상청)	'21.11.1.~'24.12.31. (3년 2개월)	1㎡	무상	무상
	경북울릉도 방사선감시소 (경북 울릉군, 기상청)	'21.11.1.~'24.12.31. (3년 2개월)	1㎡	무상	무상
	경북구미 방사선감시소 (경북 구미시, 기상청)	'21.8.1.~'24.12.31. (3년 5개월)	1㎡	무상	무상
	경북의성 방사선감시소 (경북 의성군, 기상청)	'21.8.1.~'24.12.31. (3년 5개월)	1㎡	무상	무상
	충남서산 방사선감시소 (충남 서산시, 기상청)	'21.1.1.~'25.12.31. (5년)	1㎡	무상	무상
	충남부여 방사선감시소 (충남 부여군, 기상청)	'20.12.1.~'25.11.30. (5년)	1㎡	무상	무상
	울산약산 방사선감시소 (울산 중구, 기상청)	'21.1.1.~'23.12.31. (3년)	1㎡	무상	무상
	경남거제 방사선감시소 (경남 거제시, 기상청)	'21.1.1.~'23.12.31. (3년)	1㎡	무상	무상
	경남진주평거 방사선감시소 (경남 진주시, 기상청)	'21.1.1.~'23.12.31. (3년)	1㎡	무상	무상
	경남남해 방사선감시소 (경남 남해시, 기상청)	'21.1.1.~'23.12.31. (3년)	1㎡	무상	무상
	경남밀양 방사선감시소 (경남 밀양시, 기상청)	'21.1.1.~'23.12.31. (3년)	1㎡	무상	무상
	경남거창 방사선감시소 (경남 거창군, 기상청)	'21.1.1.~'23.12.31. (3년)	1㎡	무상	무상
	경남합천 방사선감시소 (경남 합천군, 기상청)	'21.11.1.~'23.12.31. (2년 2개월)	1㎡	무상	무상
	인천옹진연화 방사선감시소 (인천 옹진군, 기상청)	'21.11.1.~'25.12.31. (4년 2개월)	1㎡	무상	무상
	인천전동 방사선감시소 (인천 중구, 기상청)	'21.11.1.~'25.12.31. (4년 2개월)	1㎡	무상	무상
	경기파주문산 방사선감시소 (경기 파주시, 기상청)	'21.11.1.~'25.12.31. (4년 2개월)	1㎡	무상	무상
	전남영광덕호 방사선감시소 (전남 영광군, 영광군)	'22.11.1.~'26.12.31. (4년 2개월)	1㎡	무상	무상
	경북울진소광 방사선감시소 (경북 울진군, 울진국유림관리소)	'22.9.1.~'27.8.31. (5년)	1㎡	무상	무상
	전북고창성두 방사선감시소 (전북 고창군, 군부대)	'22.4.9.~'23.10.9. (1년 4개월)	1㎡	무상	무상
	제주서귀포강정 방사선감시소 (제주 서귀포시, 군부대)	'17.10.10.~'23.10.9. (6년)	1㎡	무상	무상
	전북전주 방사선감시소 (전북 전주시, 기상청)	'21.1.1.~'25.12.31. (5년)	1㎡	무상	무상

	전북정읍 방사선감시소 (전북 정읍시, 기상청)	'21.11.~'25.12.31. (5년)	1m ²	무상	무상
	전북부안역리 방사선감시소 (전북 부안군, 기상청)	'21.11.~'25.12.31. (5년)	1m ²	무상	무상
	제주서귀포서귀 방사선감시소 (제주 서귀포시, 기상청)	'21.11.1.~'26.10.31. (5년)	1m ²	무상	무상
	충북보은 방사선감시소 (충북 보은군, 기상청)	'22.12.31.~'25.11.30. (3년)	1m ²	무상	무상
	충북영동 방사선감시소 (충북 영동군, 기상청)	'21.11.1.~'25.11.30. (4년 1개월)	1m ²	무상	무상
	충북충주 방사선감시소 (충북 충주시, 기상청)	'21.11.1.~'25.11.30. (4년 1개월)	1m ²	무상	무상
	충북제천 방사선감시소 (충북 제천시, 기상청)	'20.12.1.~'25.11.30. (5년)	1m ²	무상	무상
	충남서천 방사선감시소 (충남 서천군, 군부대)	'22.49~'23.48 (1년)	1m ²	무상	무상
	충남당진 방사선감시소 (충남 당진군, 군부대)	'22.49~'23.48 (1년)	1m ²	무상	무상
	전남보성 방사선감시소 (전남 보성군, 보성군)	'21.11.23.~'25.12.31. (4년 1개월)	1m ²	무상	무상
	경기김포 방사선감시소 (경기 김포시, 김포시)	'20.11.11.~ 완료시	1m ²	무상	무상
	서부지역측정소 인천강화북정 방사선감시소 (인천 강화군, 군부대)	'21.5.16~'26.5.15 (5년)	336m ²	무상	무상
	동부지역측정소 (강원 고성군, 군부대)	'18.4.1~'23.3.31. (5년)	100m ²	무상	무상
	동해지역측정소 (경북 울릉군, 군부대)	'19.6.1~'24.5.30 (5년)	304m ²	무상	무상
공유 재산	경북경주장항 방사선감시소 (경북 경주시, 경주시)	'22.11.16~'24.12.31. (2년 1개월)	1m ²	무상	무상
	충남공주 방사선감시소 (충남 공주시, 공주시)	'20.11.11.~'25.11.10. (5년)	1m ²	무상	무상
	경기수원 방사선감시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22.1.1.~'23.12.31. (2년)	1m ²	무상	무상
	경북울진부구 방사선감시소 (경북 울진군, 부구초교)	'21.9.10~'23.12.31. (2년 3개월)	1m ²	무상	무상
	제주추자도 방사선감시소 (제주 제주시, 추자면)	'20.4.1~'24.12.31. (4년 9개월)	1m ²	무상	무상
	국가환경방사선감시망 경남김해 방사선감시소 (경남 김해시, 신명초교)	'24.6.1~'25.2.28 (8개월)	1m ²	무상	무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본원 부지 및 건물 (대전) : 기관 자체소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본원 건물 : 기관 자체소유 (공동)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본원 토지 및 건물 (대구혁신도시 소재) : 기관 자체소유
- 대전 본원 : 민간건물 사무공간 임차

■ 한국세라믹기술원

- 본원 토지 및 건물 (진주시) : 기관 자체 소유
- 본원 외 부지 및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칭	임대기간	사용부지(또는 시설) 면적(m ²)	임대료(대부 료) 단가(원/m ²)	연간임대료 (대부료)(원)
공유 재산	이천분원 부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05.5.10~'24.12.31 (20년)	26,377m ²	무상	—
	이천분원 창업보육센터 부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10.1.1~'29.12.31 (20년)	8,380m ²	무상	—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부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15.10.14~'35.10.13 (20년)	12,935m ²	무상	—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부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19.12.30~'39.12.29 (20년)	16,496m ²	무상	—
	세라믹섬유실용화센터 부지 (경남 진주시 문산읍 [現 충무공동])	'14.3.1~'34.2.28 (20년)	6,000m ²	무상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본원 토지 및 건물 (진주시) : 기관 자체 소유
- 본원 외 부지 및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칭	임대기간	사용부지(또 는 시설 면적(m ²))	임대료(대부 료) 단가(원/m ²)	연간임대료 (대부료)(원)
국유 재산	수상형종합평가센터 부지 (전라북도 군산시)	‘20.4.3~’30.4.2 (10년)	21,000	무상	—
	실증단지 전기실 공유수면 (전라북도 군산시)	‘20.12.1~’35.11.30 (15년)	19,299	무상	—
	옥외전파시험소 진입로 (경기도 광주시)	‘19.1.1~’23.12.31 (5년)	9,443	약 24원*	약 229,740원*
공유 재산	우주부품시험센터 부지 (경상남도 진주시)	‘18.4.13~’38.4.12 (20년)	5,940	무상	—
	항공전자기술센터 부지 (경상남도 진주시)	‘18.4.13~’38.4.12 (20년)	5,000	무상	—
	IT융합안전성기술센터 건물일부 (경기도 화성시)	‘21.1.1.~’25.12.31 (5년)	1192.6	무상	—

* ‘22년 지급 기준 (지급처 : 산림청)